

이천시4-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3. 6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 및 내용

- 이천시4-H후원회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개정하여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련법령발췌서 : 해당 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이의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'03. 6. 5. ~ 6. 25.

기타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4-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4-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수익금의 일부를”을 “수익금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중 “이자 수익금 중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”를 “이자수익금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농업기술센터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농업진흥과장 유 상 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력육성담당 정 중 화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준 영 (261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3조 (기금의 용도) ①시장은 기금에 의한 이자 <u>수익금 일부</u>를 후원회에 지원하여 다음 각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1 ~ 5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 (기금의 관리운용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 <u>수익금중 80퍼센트</u>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.</p>	<p>제3조 ----- ----- <u>수익금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5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기금의 관리운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<u>이자수익금</u>으로 한다.</p>